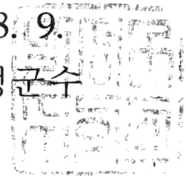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8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8. 9.

제출자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공무원이 주요 시책·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경우 이를 치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. 이에 기관장이 판단하여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여 기관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, 공무원의 복지 및 사기 제고를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특별휴가 조항 신설(안 제23조제18항)

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,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5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제2호, 제3호)
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⑱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 시책·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,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⑰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⑰ (현행과 같음) ⑱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 시책·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,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☐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☐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6조(휴가의 종류)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·병가·공가(公暇)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~⑧ (생략)

